

제 6 장 서비스 이용 계약 및 해지

제 22조(계약목적)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간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
제 23조(서비스이용 계약)

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,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계약 기간 | 2) 계약목적 |
| 3) 서비스 내용 및 월 이용료 | 4)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|
| 5) 계약의 해지 | 6) 기타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 필요사항 |

제 24조(서비스이용 계약기간)

계약 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서비스이용 계약 기간을 정한다.

- ①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진행한다.
- ② 계약 기간은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고, 1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③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 25조(서비스 비용)
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, 비용을 산정한다.

- ①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에서 정한 월 사용시간 및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은 최대 4시간(1,2등급), 최대 3시간(3,4,5등급)까지 사용 가능하며 등급과 상관없이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된다.
- ③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이동식욕조를 활용하여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로 산정한다.
(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에 따라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)
- ④ 수급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 비용의 15%~0%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.
일반대상자 : 15% 경감대상자 : 6%, 9% 기초생활수급권자 : 0%
-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근무시간 외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비용은 100% 수급자(보호자)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다. (예: 병원 동행 시 교통비 등)

제 26조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
- ① 수급자 및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 시 제공하는 개인별요양이용계획서에서 준하는 서비스를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.
 - 1)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 - 2) 수급자는 존엄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- 3)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- 4) 수급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받음에 있어 각호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.
 - 1) 수급자 관련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변경 시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.
 - 2)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- 3)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- 4) 분실,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.
- 5) 수급자 외 가족의 관련 가사 서비스 등 계약 외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6) 수급자는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27조(계약해지)

계약 기간 중 각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서비스 변경 요청 또는 사망하였을 때
- ②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
- ③ 수급자로 인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을 때
- ④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

제 7장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

제 28조(서비스내용)

① 방문요양

- 1) 신체활동지원서비스 : 세면·목욕·배설·식사·이동 도움, 청결 및 위생관리, 착·탈의, 체위 변경, 신체 기능의 유지·증진 등
- 2) 가사활동지원서비스 :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·세탁·주변 정돈 등
- 3) 개인활동지원서비스 : 외출 시 동행·부축, 일상 업무대행 등
- 4) 정서지원서비스 : 말벗 및 격려, 여가 활동 등
- 5) 인지활동지원서비스 :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등

② 방문목욕

- 1)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식 욕조 장비를 갖추어 대상자 가정 내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
- 2) 대상자의 목욕 준비, 입욕 시 이동 보조, 몸 씻기, 머리 말리기,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, 배설처리, 목욕 후 주변 정리 및 간단한 상태 관찰하는 행위 등을 포함

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

- 1)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
- 2) 치매 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

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
- 1)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물적 자원연계 사업
- 2)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
- 3) 지역사회 내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

제 29조(서비스비용)

서비스비용은 당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서비스 수가가 정해진다.

○ 등급별한도(원)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022년	1,672,700	1,486,800	1,350,800	1,244,900	1,068,500
공단 지원금	1,421,800	1,263,780	1,148,180	1,058,160	908,220
본인 부담금	250,900	223,020	202,620	186,740	160,280
■ 본인 부담금 : 일반 15% ■ 경감 대상자 : 6%, 9% ■ 기초수급자대상자 : 0%					

○ 방문요양 시간별수가

* 사용가능시간 : 1,2등급 : 4시간(240분) / 3,4,5등급 : 3시간(180분)까지 가능

(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으로 1,2등급 1일 270분~480분, 3,4등급 1일 210분~480분까지 가능)

시간	시간별 수가	공단지원금	본인부담금	비고
		85%	일반(15%)	
30분	15,430	13,110	2,320	
60분	22,380	19,020	3,360	
90분	30,170	25,640	4,530	
120분	38,390	32,630	5,760	
150분	44,770	38,050	6,720	
180분	50,400	42,840	7,560	3~5등급
210분	56,170	47,740	8,430	
240분	61,950	52,650	9,300	1~2등급

○ 방문목욕 수가(1회)

서비스시간	이용금액(원)	공단지원금(85%)	본인부담금(15%)
60분	44,240	37,600	6,640

제 30조(본인부담금)

① 수급자 구분에 따라 한도액 기준하여 서비스 사용 총비용의 15%~0%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.

본인부담금 : 일반대상자 : 15%, 경감대상자 : 6%, 9% 기초생활수급권자 : 0%

② 서비스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계약 후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수납으로 한다.

제 31조(이용료 및 비용 부담, 변경)

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이용 비용이 결정되며 결정된 서비스 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.

① 수급자의 등급 또는 경감으로 자격 변동이 되었을 경우

②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동되었을 경우

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

④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 32조(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)

①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기관(요양보호사 포함)의 미흡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② 계약 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로 “변경계약서”를 별도 작성한다.

제 33조(변경절차)

① 수급자는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(대리인)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.

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(대리인)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수급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본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.

③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